의 아 버호

1935

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]

# 검 토 보 고

#### 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2. 3. 25.(금)

O 제 출 자: 중구청장

○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5.(금)

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6.(수)

### 2. 제안이유

O 노점 점용허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권리·의무의 승계기준을 마련하고 노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O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개정(안 제4조제6항)
- 노점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·의무 승계사항 개정(안 제4조의2)
- 노점관리를 위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7조)
  - 환경오염 행위 등

#### 4. 근거법규

- 「도로법」제106조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
- 「도로법 시행규칙 | 제50조(권리·의무의 승계신고)

## 5. 검토의견

- 노점 점용허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권리·의무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노점운영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노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.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